Macro Comment

트럼프 IEEPA 관세 위헌 판결, 상징적 의미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약해

Economist 최제민 jmchoi@hmsec.com
RA 조준우 jjw980803@hmsec.com

- 美 대법원의 트럼프 IEEPA 관세 위헌 판결은 미국의 제도가 여전히 작동함을 증명(상징적 의미)
- 다만, IEEPA 관세는 실질적으로 다른 조치를 통해 대체 가능(단기 122조, 영구 232조, 301조 등)
- 관세율은 판결 전 16%→위헌 판결로 9.1%까지 하락→글로벌 관세15% 부과로 13.7%로 반등
- 관세율 소폭 낮아졌으나 변화는 제한적, 환급 문제, 추가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 확대 우려는 상존
- 실효관세율 하락으로 관세발 물가 상승 및 성장 둔화 효과는 일부 약화, 재정부담은 증가 불가피

미 대법원 IEEPA 관세 위헌 판결은 미국의 제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의

-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IEEPA 관세 위헌 판결은 미국의 제도가 아직까지는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 중 2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던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동참. 또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일관된 결론에 도달. 대법원의 판결 논지는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는 다는 것.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남용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IEEPA 관세 대부분이 대체 가능해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 불확실성은 확대

- 트럼프가 IEEPA 관세를 대체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관세율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전망
- 트럼프는 위헌 판결 3시간 이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보편 관세를 발효했고,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
  - 무역법 제122조(1974년 제정)는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한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율을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고, 150일 경과 이후 연장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
  - 한편, 품목관세(제232조) 적용 품목, 핵심광물, 에너지/에너지 제품, 의약품, 천연자원, 비료, 전자제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USMCA 준수품목 등은 제122조 관세 적용을 면제
- 또한 IEEPA 관세가 무효화됐으나 제232조 품목관세를 통해 부과된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은 여전히 유효
- IEEPA 위헌 판결 전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16% 수준이었으며, 위헌 판결 IEEPA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9.1%까지 하락했으나 트럼프가 발표한 122조 15% 관세율 적용 시 실효관세율은 약 13.7%로 재차 반등(Yale Budget Lab 추정. 26.02.21)
- 관세율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환급 문제, 이후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관세율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질적 관세율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고, 불확실성 확대 우려는 상존
- 미 대법원 판결에서 관세 환급(refund)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하급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환급 여부, 금액, 시점 등과 관련 법정 공방이 예상
- 트럼프는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무역법 제301조, 제232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율 수준 복원에 나설 것이고, 조사 과정 등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 변화 또는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야기할 공산이 큼

-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 15%가 글로벌 관세 15%로 대체되고,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의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빠르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대법원에 의해서 저지당한 만큼 반대급부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상존

실효관세율 소폭 하락에 따른 관세발 물가 상승 및 성장 둔화 효과 약화, 재정부담은 증대

- 단기적으로는 IEEPA 관세가 제122조 관세로 대체됨에 따리 실효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관세발 물가상승 및 성장 둔화 효과는 축소 예상돼 인플레이션에는 하방 요인, 성장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
- 다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재차 확대로 성장률 개선 효과 약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볼 때 금리 인하 기대가 소폭 강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될 여지가 있음
- 재정측면에서는 실효관세율 하락과 IEEPA 관세 환급(약 1,750억달러 규모)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환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표1〉 미국 관세 법적 수단 비교

조항	관세 부과 사유	연방 기관 조사 필요 여부	조치 기간 제한	관세율 상한
제232조	국가안보 위협	필요 (상무부)	없음	없음
제201조	국내 산업 피해	필요 (국제무역위원회)	4년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50% 상한 (1년 후 단계적 인하 필요)
제301조	미국 기업 차별 또는 무역협정상 미국 권리 침해	필요 (미국무역대표부)	4년 (최대 기간 제한 없이 연장 가능)	없음
제122조	국제수지 문제	불필요	150일 (의회 승인 시 연장 가능)	15%
제338조	미국 통상에 대한 차별	불필요	없음	50%

자료: 미국 의회조사국(CRS), Bloomberg, 현대차증권

〈표2〉 현행 관세 정책(2026년 2월 20일 기준)

제122조 권한에 의한 보편관세	
항목	**세부 내용**
세율	15% 일률 부과
면제 품목	핵심광물, 에너지 제품, 농산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
제232조 권한에 의한 품목별 관세	
품목 / 섹터	**현행 관세율**
철강	50%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알루미늄	50%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구리	반제품 · 파생상품 50%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자동차 (승용차)	25%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자동차 부품	대부분 25%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중대형 트럭 및 버스	트럭 · 부품 25% / 버스 10%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목재 및 목재 제품	10~25% 다양한 세율 — 제122조 면제 (232조 우선 적용)

주: 제232조 관세는 제122조 관세에 우선하며, 중복 적용되지 않음
자료: White House, 미국 의회조사국(CRS), USTR, 현대차증권

〈표3〉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경제·재정 효과 종합

항목	대법원 판결 이전 정책	대법원 판결 직후 (IEEPA · 122조 없음)	122조 10% 시나리오		122조 15% 시나리오	
			150일 후 만료	150일 후 연장	150일 후 만료	150일 후 연장
2026년 말 기준 실효 관세율						
종합 (대체 이전, pre-substitution)	16.00%	9.10%	9.10%	12.20%	9.10%	13.70%
종합 (대체 이후, post-substitution)	13.70%	8.00%	8.00%	10.90%	8.00%	12.20%
재정 효과						
관행적 세수 2026-2035 (조 달러)	$2.62	$1.27	$1.29	$1.94	$1.30	$2.20
동태적 세수 2026-2035 (조 달러)	$2.29	$1.09	$1.11	$1.71	$1.13	$1.93
중기 물가 영향						
PCE 물가 변화율 (대체 이전)	1.20%	0.60%	0.60%	0.80%	0.60%	1.00%
PCE 물가 변화율 (대체 이후)	0.90%	0.50%	0.50%	0.70%	0.50%	0.80%
가구당 실질소득 손실 (대체 이전, 2025$)	$1,577	$781	$781	$1,137	$781	$1,315
가구당 실질소득 손실 (대체 이후, 2025$)	$1,194	$618	$618	$921	$618	$1,042
생산 및 고용						
2026년 Q4-Q4 GDP 성장률 변화 (%p)	-0.3	0.1	0.1	0	0.1	-0.1
2026년 말 실업률 변화 (%p)	—	0.3	0.3	0.3	0.3	0.3
장기 실질 GDP 수준 변화 (%)	—	-0.1	-0.1	-0.1	-0.1	-0.2

자료: Yale Budget Lab,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최제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